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사회복지법인 영락재단
참사랑실버요양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본 지침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참사랑 실버요양원 모든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 2항의 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흥기로 위협한다, 찌른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다. - 신체를 구속·감금한다. 묶는다. - 무리하게 먹인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증세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2)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강제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 사회관계의 단절 - 분노 또는 수치심

3)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양로원 등의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외출시키지 않는다. -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 노인을 보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창피를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응답이 없다.

4)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거래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인출하거나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노인의물건을 빼앗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체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에서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래가 발견된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5) 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이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 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물, 대소변 냄새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다. - 욕창, 땀띠, 염증, 이(기생충) 등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침대나 이불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 자신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 본인의 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4.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 시설운영규정(인권보호 및 안전관리규정 제4장 노인학대 방지규정)

제6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 본 재단의 생활어르신과 직원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2. 본 재단 내 시설의 장 및 직원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 신고인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지행위)

본 재단 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8조(노인학대 응급조치 의무 등)

1.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직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학대관련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실시

- 사업내용

- 24시간 노인학대상담사업(전문상담서비스, 일시보호, 의료지원, 법률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신고전화 : 1577-1389 또는 129

- 노인인권보호사업(노인인식개선사업, 효행교육)
-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
-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이동상담실시, 언론홍보, 학술행사, 캠페인, 사진전)
- 협력체계 구축사업(자문위원회,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후원, 자원봉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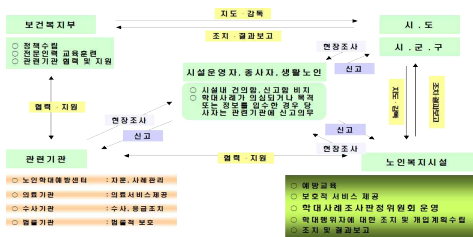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응급상황의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노인복지법 제39조의 7)
-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의식주 제공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 학대행위자 등 가족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진행

6) 관련 기관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5. 노인학대 예방활동

참사랑실버요양원은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기본원칙

1. 생활노인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를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장과 종사자는 “시설생활 노인학대예방지침 및 학대사례개입지침에서 제시한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2) 시설의 의무

1. 시설의 장은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종사자와 생활 노인에게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2.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장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公示)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장은 노인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행위를 신고·수렴해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침해 구제기관 콜센터 번호를 벽면에 부착하여 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시설의 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종사자의 의무

1. 시설의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설의 종사자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시설의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의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5. 시설의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시설의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 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8.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본 시설 및 노인 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학대발생에 대한 조치사항

1.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설의 장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장은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장 및 모든 종사자는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472-1389) 또는 수사기관(552-0119)에 신고할 것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신분이 보호되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신고 및 대응 조치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

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112**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 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

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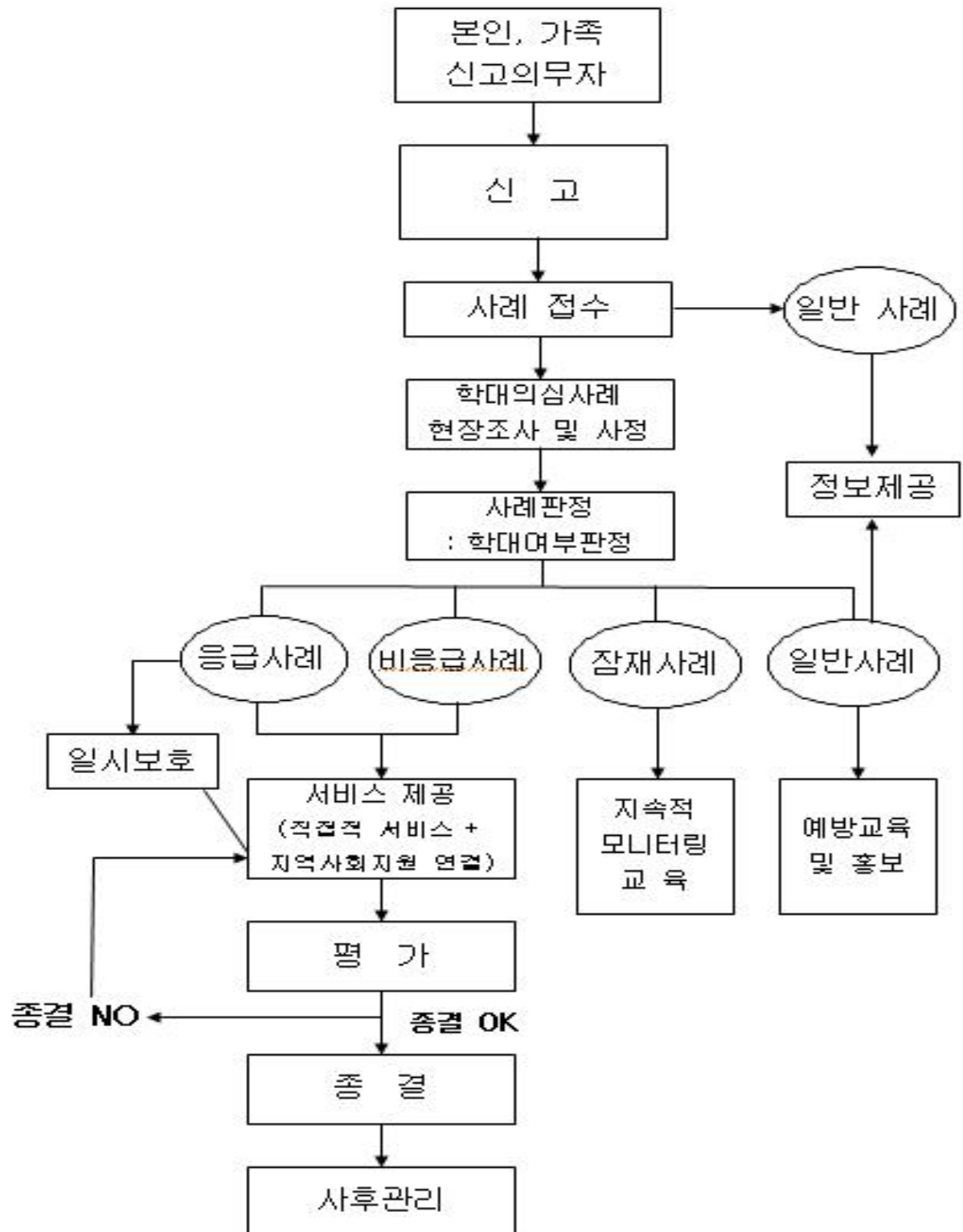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해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한 보호조치평가, 신체·심리적기능 회복정도 평가, 학대재발 가능성 평가 후 결과는 분기별로 시군구 보고

【노인학대사례 발생 시 대응체계】



【노인학대 사정에서 고려할 점 (Ammerman & Hersen 1999)】

1. 접근 (Acces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는 전문가의 접촉을 꺼려함: 학대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함(예; 피해자가 외부에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며 학대행위자를 보호하려 하거나, 신뢰받지 못할 것을 겁내며, 보복, 욕, 시설수용을 두려워하며,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여 포기한다. •필요하다면 접근시도는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지속한다. •가정방문: 학대행위자가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가해적이라면 전문가의 주의가 요망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면접을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가? 환자와 가족의 분리 상담을 위하여 면접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접근 시도 시 전문가의 도움 믿을만한 타인이 존재하는가? 이전에 다른 전문가가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접했는가? •가정방문: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가의 안전을 위협할 폭력의 역사, 정신장애, 알코올 약 남용 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접촉 전 취할 단계는 무엇인가?

2. 인지상태 (Cognitive Statu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무능력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는 전문가의 접촉을 거부하고 학대상황에 남아 있을 권리를 가진다. •다수의 피해노인들은 혼란, 기억상실, 인지상실 등의 피해자화(Victimization) 된 약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문제들은 우울, 과도한 공포 불안 등을 유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은 어떠한가? 신경심리검사가 필요한가? 가족구성원들은 노인의 정신적 능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인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가? •노인은 위험과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가? (예 : 학대상황에 남아 있을 것인가?) 가족구성원들은 노인이 생활방식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가? •만일 인지기능이 상실되었다면 시작단계인가, 진행단계인가? 치료가가능한가? 노인은 인지기능 회복을 위한 의약품 복용하고 있는가? 인지기능의 상실이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 스트레스, 의존성 증가)

3. 건강상태 (Health Statu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학대피해자들은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피해자와 학대행위자는 유사한 정도의 신체적 문제를 갖는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사고’로 인한 상처로 위장한다.(예: 신체적 학대로 인한 멍, 골절 등을 낙상한 상처로 위장). •학대행위자는 학대의 노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 •전문가는 신체적 징후와 증상을 구분한다.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징후(예: 맞아서 멍든 상처)와 연령과 관련된 신체적 상태(예: 마르거나 주름진, 건조하고 약한 피부 상태 등)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의료적 문제(청력, 시력, 운동력의 상실 등)는 무엇인가? 어떤 요인이 위기상황에서 자기보호능력을 제한시키는가? •노인의 신체에서 나타난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 조건 등에 대한 환자 가족의 설명은 무엇인가? 이전의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인의 현재와 과거의 의료기록들은 무엇이며 조사되었는가? •노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보호, 계획, 처방약품 등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가족은 이런 보호를 받으려는 노인의 노력을 방해하는가? 그렇다면 누구인가? •노인의 의심 되는 학대나 의료적 조건과 관련된 신체적 징후와 증상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사정이 시행되었는가?

4. 기능상태 (Functional Statu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적으로 의존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학대행위자는 대개 좌절, 압도되거나 죄의식을 가지며 책임에 분노한다. •기능상 의존적이든 아니든 피해자들은 학대행위자들에게 보호제공자가 되기 쉽다. •방임 피해자들은 학대피해자보다 더 많은 가정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들은 서로 비현실적 기대를 갖기 쉽다. •학대행위자는 피해자의 주 보호제공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학대행위자는 외부인이 가정 내 원조서비스 제공 허락을 방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가 원조를 제공하는가? 그 사람이 보호를 제공하는 이유는? 얼마나 자주 원조를 제공하는가? 노인은 이런 원조가 필요하다고 여기는가? 유용한가? 충분한가? 만일 필요시 원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원조를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 일종의 의도, 욕구, 자원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보호제공자가 부적절하게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보호제공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학대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는가? •노인은 어떤 원조서비스(예; 도시락서비스, 가정도우미원조 등)를 받고 있는가? 만일 권고한다면 노인이나 가족은 추가적 사회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가? 누구에게서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라면 왜 인가? 가족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호를 거절하는가?

5. 주거환경(Living Arrangement)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는 주로 동일한 가구에서 생활하는가? 가정일을 위하여 자주 한쪽이 다른 한 쪽에게 의존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일 노인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왜 그런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거했는가? •집은 누구의 소유나 명의로 되어 있는가? 생활비의 공유 정도는 어떠한가? •노인은 자신이나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다른 대안적인 주거환경을 고려할 의사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종류인가?

6. 경제적 상황(Financial Statu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생활비나 용돈 등을 의존할 수 있다. •피해자는 비공식적, 법적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의 통제권을 양도하기도 한다. •경제적 이유로 피해자들은 자시의 재정적 능력과 일치되지 않는 충족될 수 없는 보호욕구를 가질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소득원은 무엇인가? 자신은? 노인은 가족들의 생활비에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노인의 요구인가? •누가 노인의 재정을 관리하는가? 왜? 기간은? 이는 법적, 비공식적 협정인가? 인은 은행거래를 어떻게 하는가? •노인은 필요한 개인 서비스 구매를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가? 왜인가?

7.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학대행위자들은 피해자의 친구, 친척, 지역사회, 사회집단,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려 하거나 감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상시 노인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접촉의 본질은 무엇인가? 노인은 접촉의 질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가? •노인은 자신의 친구, 이웃과의 접촉, 사회활동 등의 정도와 질에 대해 만족하는가? 가족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방해하는가? •노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위기서비스 등을 알고 있는가? •노인과 가족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가족과의 관계를 만족하는가?

8. 정서, 심리적 상태(Emotional, Psychological Statu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화(Victimization)의 결과는 우울, 공포, 회피, 혼동, 불안, 자아존중감의 저하, 무기력, 수치 죄책감 등을 수반한다. •피해자의 비언어적 행동(시선회피, 무표정,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자세)의 관찰은 우울이나 불안의 증거가 된다. •부분적으로 학대행위자의 유형은 정신장애의 전력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은 ‘가정에서 행복한가?’하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노인의 감정, 수면, 섭식, 체중감소 등의 변화는 어떠한가? 이런 변화가 노인의 신체조건이나 약품복용 등과 관련이 있는가? •노인 및 가족구성원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9. 스트레스 (Stresse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물중독, 가족폭력이 학대와 관련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실직, 퇴직, 결혼, 별거, 이혼, 거주지 이전, 가족구성원의 변화, 가까운 사람의 사망, 구속 등의 외부요인이 학대 동기를 야기하기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노인은 갈등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피해 노인에게 최근의 가족의 위기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질문하라. 피해노인은 누구에게 원조를 요청하였는가? •가족폭력의 역사가 존재하는가? •노인 및 가족 구성원이 과도한 알코올이나 불법약 물을 복용하는가? •최근 노인의 생활양식이나 감정상태를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은(퇴직, 중요한 사람의 사망) 무엇인가? •최근 가족이 고용, 관계, 재정, 주거 등과 관련하여 겪은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스트레스가 노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가? 가족들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10. 학대 및 방임상황 : 빈도, 강도, 의도성

(Abuse & Neglect Status : Frequency, severity, Intent)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는 대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한다. •몇명 학대의 유형은 동시에 발생된다 (.예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 수반) •피해자나 학대행위자가 학대임을 부정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와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질문을 할 때는 먼저 많은 가족들이 이런 문제를 보편적으로 겪고 있으나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고 있음을 먼저 설명한다. 다음은 사례에 따라 다르나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해야 할 질문의 예이다. -누가 당신을 해쳤는가? -당신이 원치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만지려 하였는가? -당시의 의지와 상반된 일을 누군가가 강요 하였는가? -누군가가 허락 없이 당신의 소유를 가졌는가? -당신이 원치 않았는데 당신 소유를 양도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이 자신이 비참하거나 나쁘게 느껴지도록 소리치거나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사망하였는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가? -누군가가 위협, 협박하였는가? -환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도움 요청을 거절하였는가? •이상의 확증적인 반응들을 탐구한다 : 학대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였는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대가 증대되었는가? 학대를 조장한 것은 무엇인가? 환자 자신은 학대가 왜 발생했다고 믿는가? 학대로 인하여 노인이 위험에 처해 있는가? 위험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학대결과의 심각성은? 노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노인은 학대를 제제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방법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학대를 제제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누가 도와주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현재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가? 현재 환자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를 원하는가?

【관련법규】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제1조의2 (정의)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이에 신고의무자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국 25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법률·의료서비스 연계, 노인 학대 예방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